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의자 : 우재준 · 안철수 · 박정하
임이자 · 서천호 · 김형동
김승수 · 권영진 · 인요한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의 제목 중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u>국가식품클러스터</u>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 2. (생 략) <u><신 설></u></p>	<p>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u>국가식품클러스터</u>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2028년 12 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 ⑥ (생 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⑦ ----- ----- -----</p>

